

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~14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「아동복지법」의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, 아동위원회의 아동위원 정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조문 변경함(안 제1조)
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6조 ⇒ 「아동복지법」 제14조

나. 읍·면의 인구에 따른 공정한 아동위원 수를 정함(안 제3조)

○ 읍면별 2명으로 하되, 읍은 인구 1만명 초과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아동복지법」 제14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6. 12. 29.~'17. 1. 19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(6) 도내 개정현황

○ 개정완료(13): 창원, 김해, 진주, 통영, 사천, 밀양, 산청,

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명 “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”를 “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6조”를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4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관한 제반사항”을 “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거창군 아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3조제1항·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의 정수는 읍·면별 2명으로 하되, 읍은 인구 1만명 초과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소년소녀가장, 가정위탁아동”을 “보호대상아동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아동지도원”을 “아동전담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거창군 아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u>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「아동복지법」 <u>제14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<u>거창군 아동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<u>관한 제반사항</u> 연락과 조정 2.~4. (생략)</p>	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<u>거창군 아동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-----<u>관한</u>--- ----- 2.~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<u>위원회</u>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한 30명 이내의 읍·면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<u>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</u> <u>각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~⑤ (생략)</p>	<p>제3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<u>위원</u> <u>회의 정수는 읍면별 2명으로 하되, 읍은</u> <u>인구 1만명 초과 5천명당 1명을 추가</u> <u>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</u> <u>명을 두고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아동위원의 역할)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그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2.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. <u>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아동</u>의 후견인 및 후원자 결연 4. 아동학대 신고,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. <u>아동복지지도원</u>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 6.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아동위원의 역할) ①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 2. ----- ----- 3. <u>보호대상아동</u>----- ----- 4. ----- ----- 5. <u>아동복지전담공무원</u>----- 6.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아동위원의 임기)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u>다만,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6조(아동위원의 임기) ----- -----<단서 삭제></p>